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25.9.9. 공포·시행)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비상임이사 추천 관련 ‘교육관련단체’ 규정이 기존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안 제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8조(비상임이사의 추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라함은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를 말한다.</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1415